

‘반동 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의 신학연구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를 중심으로*

권태경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종교개혁’(Reformation)은 독일의 마틴 루터와 프랑스의 존 칼빈을 중심으로 나타난 16세기 종교개혁을 말한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와 종교만의 개혁 운동이 아니라, 16세기의 정치와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적 개혁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운동이라는 점이다.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이라 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 본 고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적인 입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한 용어가 달리 표현하고 있음을 독자들이 양해하길 바란다.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성서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성례를 성사로 표기하는데, 본고의 주제가 가톨릭의 종교개혁과 신학을 다루는 것이므로 자료 인용을 함에 있어서 가톨릭이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상기 일부 용어를 그대로 표기함을 독자들이 이해하길 바란다. 또한 이외에 트렌트 공의회-트리엔트 공의회, 종교회의-공의회, 칭의-의회 등의 용어도 가톨릭의 자료를 인용하였기에 표기를 종종 혼용하여 사용함을 독자들이 이해하길 바란다.

** 역사교육과 교수.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이어, 16세기 후반에 ‘가톨릭 종교개혁’(Catholic Reformation)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¹⁾ ‘가톨릭 종교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종교개혁을 이해함에 있어,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에 의해 나타난 16세기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투쟁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들은 가톨릭 종교개혁을 ‘반동 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라 한다. 그러나 가톨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가톨릭 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트 개혁과는 무관하게 가톨릭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가톨릭 내부의 자체적인 종교개혁이다.²⁾ 물론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가톨릭 교회에서도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가톨릭 내에서 실제적인 쇄신 운동과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16세기 가톨릭 교회 개혁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가톨릭 종교개혁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방어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의 성격과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가톨릭 종교개혁이 시기적으로 어떤 명확한 시점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한 루터 같은 개혁가 중심의 역사적인 사건

1)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윌리암스(George Williams)는 16세기 종교개혁을 3 가지로 구별하는데, 즉 루터와 칼빈 중심의 ‘관료적 종교개혁’(magisterial reformation), 재세례파와 같은 ‘급진종교개혁’(radical reformation), ‘가톨릭 종교개혁’(catholic reformation)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George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PA: Westminster press, 1962).

2)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의 개념은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H. Evennett, *The Spirit of the Counter-Reformation*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68). 1-22; Hans Hillerbrand, “Catholic Reformation”,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1996), 287-293.

도 아니기에 그러하다. 반동 종교개혁의 성격과 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는 가톨릭의 대표적인 공의회인 트리엔트 공의회 (Concilium Tridentinum, Council of Trent, 1545-1563)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중요한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의 교리와 신학을 다루었으며, 오늘날 까지도 가톨릭의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트리엔트 공의회 역사적 배경과, 1545년부터 시작된 공의회의 진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회를 평가하면서, 반동 종교개혁의 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능한 공의회의 결정과 심의한 교리적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할 것이다.

II.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과 트리엔트 공의회의 배경

‘종교개혁’은 용어의 의미가 내포하듯이, 진정한 개혁은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칼빈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1544년에 자신의 소 논문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통해 교회 개혁의 절감성을 논하였다. 이 논문은 1544년 2월 칼빈이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신성로마 황제 칼 5세(Charles 5, 1500-1558)와 여러 의원들에게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변증한 것이다.³⁾ 이 글에서 칼빈

3) 참고. 존 칼빈, 종교개혁의 필연성에 대하여,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1994).

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무흔 혁혁하신 황제 폐하 및 고명하신 제후 여러분들이시여! 아무쪼록 다음의 항을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교회는 목자들에 의해 배신당했을 뿐 아니라 속임과 벼려짐을 당했고, 극심한 분노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던져져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당신들의 보호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복종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며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기에 틀림이 없는 유일하고도 순결한 교리만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엄청 그릇된 생각으로 더럽혀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불경건으로 인해 증오스러운 미신에 의해 무디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업위는 심한 모욕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은 발에 짓밟히고 훼손당하였습니다. 아니 전 기독교계가 우상 예배로 부패되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들어 낸 것을 섭이며 절합니다. 수다한 종류의 미신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⁴⁾

이처럼 칼빈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6세기 교회의 개혁은 불가피하였다. 교회 개혁의 요구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황 바오로 3세(Paul 3세, 교황 재위 1534-1549) 시대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의 배경이 되었다. 바오로 3세 재위 시기인 1537년에 개혁파 추기경들의

4) 존 칼빈, 종교개혁의 필연성에 대하여, 173-179.

공동 작업으로 중요한 문서 하나가 만들어졌다. 콘타리니 추기경은 이 문서를 교황 앞에서 낭독했는데, 이 문서는 ‘교회 개혁에 관한 소견서’이다. 교회의 온갖 폐해를 지적한 이 문서 첫머리는, 교황은 모든 성직록의 주인이고, 그의 뜻 자체가 곧 법이고, 따라서 교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원칙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거기서 그토록 많은 폐해가 생겨나는 원천이라고 언명되어 있었다. 또한 이 소견서에는 사목에서의 폐해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신부와 주교들의 임지부재가 첫째로 꼽혔다. 성직자들이 자신의 임지를 지켜야 하는데, “거의 모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떠나 버렸고, 거의 모든 양떼가 품꾼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이다.⁵⁾

가톨릭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 공의회를 소집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의회라 부르는 가톨릭의 종교 회의는 교회 사목의 책임을 가진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문제나 사목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공식회의인 바, 주교단 교도권의 단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공의회가 성립되기 위한 절차나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 주지만, 주교단이 교황과 일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실제로 교황이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사회하거나, 주교들이 결의한 것을 교황이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라도 표명해야만 공의회의 결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의회는 각 지역 신자들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집회가 아니고, 사도단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사목권을 바탕으로 하는 회의였다. 따라서 공의회의 결의사항은 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것이 아니고 주교단의 교도권에 의거하여 결의자체로서 유권

5)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05), 209-210.

적 교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공의회의 결의를 신앙적 숙명으로 받아들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⁶⁾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가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트리엔트 공의회의 소집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황제 칼 5세의 요청으로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의 교회 개혁으로 야기되는 가톨릭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염려하여 공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교황 바오로 3세는 1536년 공의회 개최를 반포하고, 1537년에 공의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교권과 속권의 이해관계 및, 왕과 황제간의 주도권 다툼 등의 갈등으로 연기되다가, 1545년에 결국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다.⁷⁾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에 핵심적인 인물인 교황 바오로 3세의 역할을 두고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다. 미국 가톨릭 사학자 글리슨(Elizabeth Gleason)은 “누가 반동 종교개혁에 첫 번째 교황인가”라는 논문에서, 바오로 3세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였다. 글리슨 교수는, 바오로 3세가 자신의 교황 재임 시 개혁적인 추기경들을 임명하고, 가톨릭의 교황청의 쇄신과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교황 바오로 3세가 경건치 않고, 성격상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며, 자신의 주변 친척들을 교황청에 등용시킨 점 등을 비판하면서, 바오로 3세의 가톨릭 개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⁸⁾

6)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5), “공의회”.

7) <http://www.ocatholic.com/> 오요한 신부의 홈페이지에 웹 자료 참고.

8) Elizabeth Gleason, “Who was the first counter-reformation”, *The Catholic Historical Review* 80 (April, 1995); 흥치모, *종교개혁의 세계*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의 내부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톨릭 교회 교리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집된 트리엔트 공의회의 목적은 소집처에서 드러나는데 ①(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의) 오류설에 대한 신앙 교의의 해명, ②(가톨릭 교회의) 생활과 도덕의 쇄신 ③그리스도교 국민들 간의 일치와 평화, 무신앙자(특히 터키 군)에 대한 방위에 대해 심의하는 일이었다.⁹⁾

특히 공의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한 신학적 문제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논쟁의 교리를 결정하며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타락들과 남용들을 자체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의회의 결정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더욱 체계화하려고 하였기에, 가톨릭 교회의 방어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¹⁰⁾

가톨릭 교회 개혁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4시기로 구별되는데, 개혁의 제1기는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분명히 나타났던 신자생활의 개혁과 교회의자기 개혁의 시대이다. 공의회주의가 ‘머리의 개혁’ 즉 교황과 교황청 등 최고 교도기관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각 지방의 신자, 사제, 주교, 수도원장 등에 의해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지체의 개혁’(Reformatio membrorum)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기 개혁은 개개의 지방과 제도의 일부분의 단편적 개혁에 머

9) Concilium Tridentinum, ed Gorres-Gessellschaft, vols 13, Freiburg/Br. 1901-1961, 4. 226-231; G. Schreiber, ed., *Das Welt-konzil von Trient*, 2 vols., Freiburg, 1951. 1, 1-10. 재인용 H.V.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공의회 후의 영성과 신학, 현석호 옮김 (서울: 바울, 1993), 222.

10) 위리암 커님햄, 역사신학 상, 라은성역 (서울: 그리심, 2004), 631-33.

불렀다. 가톨릭 개혁의 제2기는 ‘자체의 개혁’에서 시작된 개혁이 바오로 3세 교황 때부터 교황청에 침투해 교황 지도하에 추진된 시대로서 트리엔트 공의회의 소집과 공의회의 제1기와 제2기의 신앙 교의 교리들이 이 시기를 특징짓는 것이다. 가톨릭 개혁의 제3기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나타난 새로운 교도, 사목, 전례의 이상을 개혁 교령(*Decreta de reformatione*)으로서 구체화한 회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개혁 교령이 실시되는 시대가 가톨릭 개혁의 제4기인데 17-18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¹¹⁾

III.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사항과 신학 사상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에 시작되어 1563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다음의 3기로 구분된다.

1. 공의회의 시기 구분:

① 제1기: 1545년 개회되어 1548년 정회될 때까지 약 3년간으로 이 기간 동안 공의회는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한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성서와 성전(聖傳) 모두가 신앙의 원천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불가타(Vulgate)¹²⁾역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성서의 해석권은

11)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15-218.

12) 불가타는 405년에 라틴어로 완역되어 가톨릭 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성경의 이

교회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은총 절대설과 정의 가산설을 배척하고 원죄와 의화(칭의)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성사에 대한 교리도 이 시기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황제 칼과 교황 사이의 관계 악화로 회의가 중단되었다. ② 제2기: 교황 바오로 3세의 후계자 율리오 3세(Julius 3세, 교황 재위 1550~1555) 가 1551년 개회하여 다음 해 독일 제후들의 봉기로 좌절될 때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성체성사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존’과 ‘실체변화’,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 비밀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되었다. 제2기에는 제1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지방의 주교들이 참석하였고, 황제의 입김으로 프로테스탄트들도 참석하였다. ③ 제3기: 제2기가 끝난 뒤 약 10년 후인 1562년에 개회되어 이듬해 폐회되었다. 이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심의대상은 성체성사와 미사, 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것들이었고 이에 관한 교리가 규정되었다. 그밖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 설립, 주교의 임명, 교구 시노두스,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¹³⁾

름, 불가타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뜻으로, 예로니모(Sophronius Eusebius Hieronymus)가 번역하였다. 시편을 제외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하였고, 신약 성경은 이미 번역되어 있던 라틴어 역본(譯本)을 그리스어 원본과 대조해서 정정한 것인데,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그 신빙성을 공인 받았다. 1907년 성 비오 10세는 베네딕토회 수사들로 구성된 불가타 위원회를 로마에 설치하여 새로운 개정판 간행을 촉진하였다.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불가타”).

13)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트리엔트 공의회”

2. 공의회의 결정사항과 신학

1). 트리엔트 공의회 제1기 (1545-1547년)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 12월 13일 대주교 4명, 주교 21명, 수도회장 5명, 주교 추기경 1명 등 총 31명과, 3인의 교황 대리 특사인 델 몬테(Del Monte, 후일의 교황 율리우스 3세), 체르비니(Cervini, 후일의 교황 마르체르스 2세), 폴(Pole)의 참석 하에 트리엔트에서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세계적, 보편적 공의회’가 열렸다. 공의회의 심의 방침과 의사 규칙이 정해졌는데, 유효 투표권자는 추기경, 주교, 수도원장만이고, 대학, 주교 좌 성당 사제단 대표, 결석 주교의 대리에는 심의권만이 주어지는 것으로 했다. 투표는 콘스탄츠 공의회(Council of Constance, 1414-1418)처럼 국민별이 아니고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했다. 모든 의제는 소위원회에서 준비, 심의되고, 이 심의는 유효 투표권자가 모이는 ‘총회’의 참고로 제공되는 것으로 했다. 이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대의원회에 의해 마지막으로 종합되고, 성 비질루스(S. Vigilus) 대성당에서 열리는 공개 회의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정했다.¹⁴⁾

교황 바오로 3세 주도하에 열린 제1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결정되었다. 이 회기에서 결정한 내용 중 주목할 만 것은, 가톨릭의 전통¹⁵⁾은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

14)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22.

15) 가톨릭에서 말하는 ‘전통’(tradition, 전승)은 교회 권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데, 전통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느님과 종교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모두 전통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전통주의”).

고 있으며, 구약성서의 둑시 책들을 정경적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성서를 해석하는 권한이 (가톨릭)교회에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교부들의 견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강조하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과 전통에 대한 공의회의 구체적인 입장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입을 빌어 복음을 반포하셨고, 그리고서 그것을 온갖 구원하는 진리와 행위의 법칙의 근원으로서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 온 피조물에게 전파되도록 명하셨다. 종교회의는 이 진리와 계율이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전승에 각각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인지한다. 기록되지 않은 전승(전통)이란, 그리스도의 입을 빌어 사도들에 의해 전수되었거나, 또는 사도들에게서 직접 전수되었고 (성령에 의해 지시되었던),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져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들을 말한다. 종교회의는 정통교부들을 따라, 경건과 존경심을 가지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모든 책 (한 하나님인 그들을 모두의 저자이시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모하고 그리고 언급된 전승이 신앙이나 또는 계율 어디에 포함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의 말씀에 의해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 구슬되었던 것이며, 또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승됨으로써 보존되었던 것이다.”¹⁶⁾

성경에 대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주장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분명히 다르다. 먼저 정경적 성경의 범위에 대한 공의회의 결정을 보면, 공의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하지 않

16) 토니 레인, 기독교사상사, 김응국역 (서울: 나침반, 1987), 355.

는 외경도 성경에 포함시키고, 라틴어 성경번역본인 불가타도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전승되어 온 (교회)전통도 성령에 의해 구슬된 것이기에, 성경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교회의 교의를 결정하는데 있어, 성경 이외에도 사도 전승의 전통을 수용하는 이들의 주장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는 분명히 달랐으며, 이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으며 공의회 주장의 근거도 부족하다.¹⁷⁾

외경을 성경의 권위 못지않게 강조하는 공의회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외경이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라는 공의회의 진술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정경성에 대한 증거는 예언성인데, 공의회의 주장처럼 외경이 예언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필로, 요셉 푸스, 제롬과 같은 유대와 기독교부들의 가르침과 공의회의 주장은 상반된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의 정경성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특히 루터란들과 앵글리칸들은 외경을 단지 윤리적이고 현신적 문제로만 사용했을 뿐, 믿음의 문제에서 권위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을 따르고 있는데, 이 고백서에는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정경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다른 인간의 작품들처럼 인준하거나 사용될 뿐이다”라고 주장되어 있다. 이들은 외경을 정경의 범주에 넣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외경 책들은

17)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9), 398-399.

하나님께 영감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 쓰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외경이 신약성경에서 성경의 권위로 인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¹⁸⁾ 성경의 권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의회의 주장처럼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수준에 두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기 트리엔트 공의회 동안에는 이 외에 몇 가지 다른 사항이 결정되었다. 먼저, 개혁에 대하여 주교 좌 성당에 신학교사의 교육 기관이 설치될 것과, 본당과 수도원에는 성서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사제와 신자에게 무료로 강의하는 적어도 한 사람의 교사를 주교의 선정에 의해 둘 것을 정하였다. 그리고 주교와 사제는 일요일과 축일에 강론하고, 특히 사제는 성서에 대해 강론하되, 강론 수도회원은 수도회 소속교회에서 수도원 장상의 허가만으로 강론할 수 있으나, 다른 교회에서는 주교의 허가 없이는 강론할 수 없으며, 탁발 수도자 대사 판매사도 주교의 허가 없이는 강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시작된 원죄의 교의에 대한 토론에 즈음해 전술의 제3부제가 폐지되고 약 30명의 유능한 신학자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원죄의 본질을 정욕으로 본 루터의 교설에 반하여, 세례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은 사람을 죄에서 정화해 의화하지만,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는 원죄로부터 나온 정욕이 죄의 경향을 갖는 ‘불쏘시개’로서 남는 것, 다만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점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선포했다.¹⁹⁾

18) Norman L. Geisler& Ralph E. MacKenzie, 로마 가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은성역 (서울: 그리심, 2003), 252-253. G.I. 윌리암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나옹화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1), 9-41.

19) Concilium Decreta, 641-646. G. Schreiber, 앞의 책, 95-97. 재인용. 스트라렌 외, 공

제1기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령 중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것은 칭의(Justification, 가톨릭 교회에서는 ‘의화’라고 표현한다) 교리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이 적지 않은 이 교령에 따르면 신앙은 ‘인간 구원의 발단, 모든 의화의 기초와 근간’ 이지만, 그 의는 신앙과 행동에 의해 더욱 풍요하게 되는 것, 누구나 특별한 계시가 없는 한 자신이 은총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없고 의화된 상태는 죄로 인해 상실되기도 하고 또 통회와 고해 성사에 의해 회복되기도 하는 것, 즉 의화에는 은총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받아들임과 협력이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공적에 기인하는 의화는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은총에 의한 인간의 내적 개생임을 명확히 선포했다.²⁰⁾ 이처럼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구원에 대한 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는 다른데, 즉 이처럼 공의회의 입장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행이 이를 보존하고 이것이 영생을 소유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²¹⁾

이 칭의 교리는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 양자 간의 분명한 이견이 있다. 즉, 가톨릭인들은 은혜의 우월성과 필요성을 믿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은 은혜의 유일성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은 구원이 모든 선행과는 무관하게 “오직 은혜만(sola gratia)”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카톨릭 인들은 칭의를 위한 (성인들을 위한) 믿음의 필요성을 믿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은 믿음의 유일성을

의회의 역사, 223.

20) Concilium Decreta, 647-657. G. Schreiber, 앞의 책, 77-116, 117-143. 재인용, 스트라펜 외, 공의회의 역사, 224.

21)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398-399.

믿는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만(sola fide)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종교개혁의 독특한 구원 교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오직 성경에 기초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다. 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는데, “선행으로 인해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²²⁾

가톨릭에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은,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본성이 부패하여 범죄할 능력 외에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므로, 만사는 은총의 소산이라 하며, 은총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세우는 새로운 관계라는 입장에 서있다. 이에 대하여 트리엔트 공의회는 의화 교령에서 “인간이 인간 본성의 힘에 의하여 성취되는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현존하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단죄하는 기본입장에 서 있다.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한 구원과정에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화시키는 은총은 인간 안에서 참된 효과를 발휘하여, 죄인의 처지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되며 구원에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가 은총의 우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관통되어 있는 인간도 보고 있으며, 반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은총 입은 인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주도적인 은총 행위의 전제 하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인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해졌다. 결국 공의회에서는 의화는 오로지 은총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되 인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로지 신앙만이 의화시키나 진정한 신앙에는 선행

22) Norman L. Geisler& Ralph E. MacKenzie, 로마 가톨릭주의와 복음주의, 321-22.

이 없지 않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또한 의화는 일회적 사건이면서도 일생에 걸친 과정이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 것도 내세울 수 없으나, 성경은 공로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²³⁾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은 공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칭의’ 교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신칭의’라고 말한다. 이는 바울의 로마서에 근거하여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복음’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조건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²⁴⁾

2). 트리엔트 공의회 제2기 (1551-1552)

1550년 2월7일 교황에 선임된 율리오 3세는 12월 14일의 척서로 1551년 5월 1일에 공의회 재개를 결정했다. 제2기 공의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교리인 성체성사(Sacrament of Eucharist)와 고해성사에 대한 문제를 심의했다. 일반적으로 성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7가지 성사 중 2가지, 즉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경적인 근거를 지닌 성례로 인정한다.

7대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교회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날 수 없고, 성사 없이 하느님

23)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의화”.

24) Harold Brown,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 라은성 역 (서울: 그리심, 2001), 433-34.

과도 상통할 수 없다.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7가지 성사가 있는데, (1) 아직 초자연적 생명을 얻지 못한 미신자에게 베푸는 세례성사, (2)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 주고 신앙에 방해되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견진성사, (3)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스스로를 제공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 (4)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백성사, (5)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 (6)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집전,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신품성사, (7) 혼인생활로 성스런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 등 7가지다. 그 밖에 다른 성사는 없다.”²⁵⁾

성체성사와 관련하여 공의회는 주장하기를, 성체 안의 그리스도의 존재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실체라는 것, 성변화에 의해 빵과 포도주는 그 형상 안에 본질이 변화되고, 그것은 영 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육과 피라는 것, 이 성사에 대해 예배가 행해져야 할 것과 영성체에는 고해 성사에 의한 준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선포했다.²⁶⁾ 이 공의회에서 말하는 성체는, 신약의 성사로서 살아 계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참으로 실재로, 실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주는 형태에 불과하고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영혼과 모든 속성, 즉 인성과 친주성 까지도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현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빵과 포도주이면서 실체로는

25)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성사”.

26)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26-227.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다. 즉 성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로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를 실체변화(Transubstantiatio)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는 성사인데, 성사란 하느님의 은총을 효율적으로 인간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표징적인 것이다. 성체가 성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 몸과 피를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는 제사를 제정하여 인류가 그 제사에 참여하므로 마음을 은총으로 충만케 하고 장차 올 영생에 대한 보증을 주는 파스카(즉 죽음에서 영광된 새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잔치로 삼았기 때문이다.²⁷⁾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체성사의 ‘실체변화’ (화체설)와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단어(‘살’과 ‘피’)라도 성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서는 교부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화체설을 주장하지만, 화체설이 교부들의 만장일치의 교의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성체 경배는 육체적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측면이 있다(출20:4). 따라서 가톨릭의 성체 성사의 주장과 근거는 교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성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지할 바는 성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즉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는 것이다.²⁸⁾

27)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성체성사”.

28) Norman L. Geisler& Ralph E. MacKenzie, 로마 가톨릭주의와 복음주의, 378-383; 월리암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3-25.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정의한 또 다른 교리인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한 성사이고 통회, 고백, 보속이 필요한 것이며, 죄를 사하는 권한은 그리스도로부터 주교와 사제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 병자 성사가 성서에서 유래하는 성사이고 사제에 의해 주어 질 것을 확인하는 교령이다.²⁹⁾ 고해성사는,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성세 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이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사의 하나로서 성세 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보속과 고해신부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준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에 중보자로서 사제(신부)의 역할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³⁰⁾

또한 공의회 제2기 동안 보속 교리가 정의되었다. 보속은 넓은 의미로 끼친 손해의 배상(Compensatio) 및 보환(Restitutio)을 뜻하나,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별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 안셀모(St. Anselmus)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29) Concilium Decreta, 669-678. G. Schreiber, 앞의 책, 109-116. 재인용.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27.

30)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고해성사”.

충분히 보속한다고 주석한 데서 비롯한다. 가톨릭 윤리 신학상의 보속은 고백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를 징계하는 별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다. 세례 받기 전에 범한 죄는 성세성사로써 별까지도 다 사하지만,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백성사로써 사하여진다. 그러나 그 죄의 별까지도 다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벌만 사하여질 뿐 잠벌은 남아 있게 된다.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하여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벌이란 뜻이며, 이는 우리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으로, 자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보속은 자신의 죄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나 물질적인 손해를 진정으로 기워 갚고자 하는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하므로 응보적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보속이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한 그것은 공로를 세우는 바 되기도 한다.³¹⁾

3) 트리엔트 공의회 제3기 (1562-1563)

교황 피우스 (Pius) 4세 하에 열린 제3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미사와 혼인성사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하였다. 가톨릭에서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Missa’에서 유래됐으며, 중국어나 한국어로 그 발음을 딴 것이다. 이 용어는 5세기부터 서방 라틴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며 최후 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가 친히 당신 교회 안에 물려 준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만찬제사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Missa’라는 라틴어는 ‘보내다’, ‘떠나 보내다’, ‘파견하다’의 뜻을 가진 ‘Mittere’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31)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보속”.

본래 ‘Missa’라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로마시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던 것이다. 즉 ‘Ite, Missa est’라는 관용어는 법정에서 ‘재판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한다든지 혹은 황제나 제후, 고관대작들을 알현한 뒤 ‘알현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여 거룩한 집회인 미사 성제(聖祭)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말이었다. 또한 Missa는 ‘파견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즉 신자들은 미사 성제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무한한 구원의 은총에 감싸였으므로 이제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희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파견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미사는 가톨릭 교회인 천주교의 거룩한 제사다.³²⁾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미사에 대해, 그것이 십자가상의 희생과 봉헌 방법은 다르나 본질은 같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억이고 현존이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보속을 주는 희생인 것, 또 봉헌문은 작은 소리로 외울 것이 아니고, 미사 전례에 외적 장식은 불필요하고 성인을 찬양해 그 전구를 빌기 위해 미사를 봉헌할 것이 아니고, 사제만이 영성체 하는 미사는 폐지할 것이고, 모국 어로 미사를 드린다는 의견은 잘못이란 것 등을 명확히 선언했다. 라틴어를 미사의 공식용어로 하는 규정도 채택되었으나, 이 규정은 동시에 사제가 신자에게 미사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명하고 있다.³³⁾

가톨릭에서는 모든 미사에서 그리스도가 희생되신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희생으로서의 미사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찬이 희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2)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미사”.

33)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30.

중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희생을 추억하라는 것이지, 재현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루터란 역시 희생으로서의 미사 개념을 거부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속죄하셨다면, 신자가 단 한번의 희생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더 이상 반복된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³⁴⁾ 공의회 제3기 동안 이전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가톨릭 교리의 개혁적인 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성찬시 평신도에게도 잔을 주며, 사제의 결혼과 공중예배에서 모국어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허용하자는 개혁안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주교들은 이 개혁안을 지지하였으나, 스페인 주교들은 (가톨릭 전통의) 교회의 교리나 관례를 어느 것 하나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반대하였다. 결국 스페인 주교들은 평신도에게 잔을 수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성직자들의 결혼을 가증히 여겼고, 예배 중의 모국어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를 볼 때 일부 가톨릭 주교들의 교회 내의 혼인을 위한 개혁적인 안은, 이후 가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한편 트리엔트 공의회는 혼인성사를 심의하였다. 가톨릭에서 혼인은 하나의 성사이다.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가 그러하듯이, 불가견적·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가견적인 표지로

34) Norman L. Geisler& Ralph E. MacKenzie, 로마 가톨릭주의와 복음주의, 386.

35) 토마스 린제이, 종교개혁사, 이형기 차종순역 (서울: 대한예장출판부, 1991), 321-22.

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의의 표현은 혼인 유대의 상징적 실재와 부부 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장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일방이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³⁶⁾

공의회는 혼인에 대해 정의하기를, 세례를 받은 자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에 상응한 성사란 것, 교회는 혼인의 장애를 확인하는 권위를 갖는 것, 이혼 후에는 재혼 할 수 없는 것, 성직자는 결혼 할 수 없다는 것, 혼인의 상태는 독신의 상태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는 것, 교회가 무효라고 확인하지 않는 한, 한 종인 혹은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맺은 혼인은 유효한 혼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사제와 2,3인의 증인의 동석 없이, 또 혼인 기록에 등록되지 않고 맺은 혼인은 무효로 할 것 등을 결정했다.³⁷⁾

이외에 공의회 제3기 제23회 개혁규정은 성직자의 이동이 아니라 정주를 요구하고, 사목(Pastoral Ministry)은 하느님의 규정이라는 전제문으로써 의무화하며, 충분한 이유 없이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성직록의 전 수입의 몰수로서 처벌될 것을 정하였다. 이외에 주교좌 성당 사제 단원과 추기경 단원인 자는 3개월 이내에 서품될 것이며, 서품에는 후보자의 출생, 인물, 연령, 덕행, 교양, 신앙에 대해 소속 주교구에서 심사가 선행될 것이다. 그리고 한 교구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여러 교구에 성직자 교육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하고, 특히 가난한 가정의 학생을 입학시킬 것

36) 한국교회사 연구소, 가톨릭 대사전, “혼인성사”.

37)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33-234: Concilium Decreta, 770-775.

등을 규정했다. 또한 23회 총회는 신품이 지워질 수 없는 영적 표장을 주는 성사라는 것, 합법적인 신품에는 세속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또 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되는 신정 조직을 가질 것이며, 교황권에 의해 선정된 주교는 인정의 제도가 아니고 그것만이 정당한 주교임을 확인했다.³⁸⁾

다른 한편, 제25회 총회는 연옥과 대사에 대해, 또 성인, 유물, 성화의 존경에 대해 신앙을 선언하고 수도회 및 수녀회의 규율에 관한 22장의 개혁규정과 일반적 개혁규정 21장을 채택했다. 일반적 개혁규정은 초기경의 생활, 주교에 의한 파문권 행사의 범위, 특면권부 성당 사제단의 시찰, 교회의 보호권에 관한 주교의 감독, 세속권에 대한 주교권의 존중, 결투의 금지와 교회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에 의한 교회 개혁의 실시 등에 관한 것으로서 3기를 통한 공의회의 결정은 교황좌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라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이처럼 트리엔트 공의회는 18년 동안에 걸쳐 공의회의 소집과 목적에 따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처하고자,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였고, 결국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시도한 가톨릭 종교회의였다.³⁹⁾

IV. 맷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리를 체계화하고,

38)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32: Concilium Decreta, 718-720.

39) 스트라렌 외, *공의회의 역사*, 233-234: Concilium Decreta, 770-775.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 소집된 종교 회의였다. 공의회의 소집과 목적을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화한 사건이었다.

교황들은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에 대하여 공의회가 교황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의회 소집에 대한 황제와 교황의 입장이 실제로 서로 달랐다. 그리고 가톨릭 주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즉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주교들은 황제의 편에 서서 교회의 개혁을 원하였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주교들은 교황의 편에서 프로테스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교리 문제만 다루고, 교회 개혁은 교황에게 일임하고자 하였다. 결국 1545년 시작된 트리엔트 공의회는 1564년까지 제3기에 걸쳐 18년간 25차에 걸쳐 열렸으며, 이 기간 동안 본 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요한 가톨릭의 교리가 정해졌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전의 가톨릭 공의회와는 달리, 공의회에서 논의하고 정한 개혁안과 교리들을 비교적 교황들이 수용하고 시행한 가톨릭에서 볼 때는 하나의 개혁적인 공의회로 평가되며, 영성 쇄신운동의 차원에서 나타난 개혁 수도회도 트리엔트 공의회의 영향으로 보여진다.⁴⁰⁾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리를 확정하고 가톨릭 교회의 개혁에 기여한 공의회이지만, 중요한 교리가 결정될 당시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투표권도 일부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며, 다수파인 이탈리아 중심의 주교들이 개혁보다는 가톨릭 교리를 정하는 교황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계를 가진 공의회

40)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가톨릭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김성태 교수의 자료 도움과 조언에 감사한다.

였다. 그리고 공의회의 결정 사항에 불가피하게 교황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공의회는 오히려 교황의 수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실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주교에 대한 사항이다. 즉 공의회는 주교의 목회적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교에게 대주교의 관할 아래 있는 교회 행정지역인 관구의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공의회가 주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것은, 중세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개혁적인 가톨릭 교계 제도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톨릭 성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신학교 설립을 통해 가톨릭 사제를 양성하려는 시도는, 공의회가 이후 가톨릭의 개혁에 기여한 것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⁴¹⁾

16세기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두고 학자들 간에, ‘가톨릭 종교개혁’이 ‘가톨릭의 자체적인 개혁이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방어적인 개혁이냐’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공의회의 결정과 개혁의 성격을 볼 때 가톨릭 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대한 방어적인 ‘반동 종교개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시 가톨릭 교회가 당시 개신교 성향의 사람들을 이단자로 여기며, 이들을 종교재판으로 처단한 것을 보더라도 가톨릭 개혁이 반동적인 개혁임이 분명해 진다.⁴²⁾

실제로 트리엔트 공의회는 자신들과는 다른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주장과 교리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그들을 파문시키는 일을 행하였다. 이에 스코틀랜드 교회사가인 윌리암 커닝햄(William

41)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3), 569-570.

42) 이상규, “교회사 연구의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 *역사신학* 3 (2001), 283-84.

Cunningham)은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공의회는 루터나 다른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극단적이고 과장된 진술들의 일부를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정죄하고 과문하는 교묘한 책략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⁴³⁾ 요컨대 트리엔트 공의회는 무엇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자구적인 방어와 보수적인 반동 차원의 공의회였다.

43) 윌리암 커남햄, 역사신학 상, 633-634.